

## 가격조정명령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	사건유형	조정명령
원고	주식회사 □□□□ 외 3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9
판결선고일	2019. 1. 31.	비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2015. 1. 29. 원고승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 2016. 11. 30. 항소기각(원고승소)
사건개요	원고 주식회사 □□□□ 외 3개 업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인정 교과용 도서 출판하는 출판사들로 교육부 및 9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가격조정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 및 부칙조항의 위법·위헌성(위임한계 일탈,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이 있고, 처분 자체의 위법·위헌성(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이 있어 가격조정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함.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청구취지 -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교과용 도서) 각 가격조정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 위반한 절차적 하자 존재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이상인 경우)의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라고 판단한 금액이 어느 부분이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호(예상 발생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 해당 원고들 스스로 예상 발행부수와 실제 발행부수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 교육부장관이 처분 전 1차, 2차, 3차 심의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준부수 결정방식 등 조정가격 산정방식과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해당 원고들로서는 각 가격 조정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조항을 기재한 것 외에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가격 조정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 -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조항 제3호를 근거로 한 처분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p>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러한 처분들이 가격 조정 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추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p> <p>○ 공공재인 교과용 도서 가격의 적정성과 안정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및 학부모의 부담 증가 완화의 필요성 등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p>
<p>결 론</p>	<p>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